

[사 건 명] 핵심 2019 - 95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교내봉사 2일(4시간) 등』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5.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교내봉사 2일(4시간)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2019. 4. 29. 오후 5시쯤, 청구인과 a 학생은 같은 반 친구인 b의 집에 있었으며, b과 a이 대화하던 중에 피해학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a 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하였고, 그 이야기를 들은 b 학생은 a 학생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학생에게 시비를 거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고, 여러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a과 피해학생은 서로 만나 싸우기로 하였다.

나. 2019. 4. 29. 오후 9시 30분쯤 청구인과 b, a, 피해학생, c, d 총 6명은 PC방 근처 공터로 이동하였고, a과 피해학생은 싸우기 시작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b과 함께 a과 피해학생의 싸움을 부추겼고,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은 2019. 5. 1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라고 함.)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9. 5. 20. 청구인

에게 『서면사과, 교내봉사 2일(총4시간), 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5시간』 처분 조치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 5. 27. 이 사건 처분을 있음을 알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2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오후 3시경 영화 보기로 한 개인 일정이 있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은 오후 1시 39분부터 오후 6시 5분까지 청구인의 보호자에게 사전 양해 없이 방과 후에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사안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의한 방과 후에 사안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한다는 내용에 반하므로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결과 통지서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교폭력’ 규정 사항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설명하지 않고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일관되게 싸움을 부추기지 않았고 싸움을 말렸다고 진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이 사건의 가해 행위 적용 및 사안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으로 확정하여 조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라. 사안 조사 시, 청구인은 물론 관련 학생들은 핸드폰을 압수당한 상태였고, 진술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압적인 말투와 행동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의 진술내용이 계속 바뀌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마. 피청구인은 학생들 간의 관계성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파악 없이 청구인의 진술은 무시한 채, 피해학생의 진술과 피해학생 보호자의 추측성 진술에 편중되어 싸움을 한 당사자는 피해학생이 되고 청구인은 친구들의 싸움을 조장한 나쁜 가해자로 확정하였으며 이는 편파적인 내용이다.

바. 피청구인은 b 학생이 ‘청구인이 싸움의 원인’ 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하나, 피청구인 답변서에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으며, 피해학생 측이 ‘청구인과 a 학생이 상하관계’ 였다고 주장한 점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그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 유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측은 청구인 보호자에게 사전 양해 없이 방과 후에 사안조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a 학생의 신체적 피해상황이 육안으로 심각했으며 심리적으로도 불안함을 보여, 피청구인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싸움 현장에 있었던 청구인을 시험이 끝나고 종례를 다 마친 오후 1시 30분경부터 조사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의 휴대폰으로 청구인 어머니와 즉시 통화를 하여 상황 조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조사가 끝난 후 학교 전화로 청구인 어머니와 통화하여 현재까지 조사하여 밝혀진 사실을 알려드렸다.

나. 피해학생 진술서에 의하면 “◇◇◇하고 b이 ‘재밌겠다’ 라고 웃으면서 나갔다. 싸우는 도중에 ‘왜 이렇게 못 싸워’ 이라 하고 ‘재미없네’ 이라 했다,” 등 작성되어 있고 자치위원회에서는 “처음에 저희가 주저하고 있을 때 재미없다. 이런 말을 했고 싸움이 심해질 때만 말렸고.....” 라고 일관되게 청구인이 싸움을 부추겼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자치위원회 조치사항은 교육적 조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논의를 바탕으로 청구인에게 조치를 내린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라.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한 이유는 사안의 특성상 여러 학생이 말을 맞춰 사안이 축소, 은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으며, 사안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말투와 행동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마. 청구인은 피해학생과 피해학생 부모가 주장하는 내용만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피청구인의 지극히 편파적인 조치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사안과 관련된 모든 관련 학생들의 진술서와 자치위원회에서의 관련학생, 관련학생 학부모의 진술을 모두 참고하여 조치 사항을 결정하였다.

바. 청구인이 지목한 피해학생은 피해와 가해관련 조치를 모두 받았으며, 가해학생으로서 ‘서면사과, 교내봉사 3일(총6시간), 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이수 5시간’을 조치받았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2.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및 증거자료, 구술

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9. 4. 29. 오후 9시 30분쯤 청구인과 b, a, 피해학생, c, d 총 6명은 PC 방 근처 공터로 이동하였고, a과 피해학생은 싸우기 시작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b과 함께 a과 피해학생의 싸움을 부추겼고,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바,

전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a과 피해학생이 싸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b과 함께 a과 피해학생의 싸움을 부추겼고,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행위 등은 모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재량의 남용·일탈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고,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본 사안의 경우 전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행위가 학교폭력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성정도가 부족한 점, 청구인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안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청구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고 이를 계기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 등은 적절하다 할 것이며,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부당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청구인에 대하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피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